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지역본부	1급 또는 2급			4급
	사업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부터 5급까지		4급	5급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역본부	2급			4급
	사업본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업소	4급 또는 5급			5급
시·군·구	인구 15만 이상	4급부터 6급까지			5급
	인구 15만 미만	5급 또는 6급			

비 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본부장 중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정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을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사업소의 장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차장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도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 직급	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특별자치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시·자치구의 출장소	5급 또는 6급		
읍·면의 출장소	6급		

비 고

-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